

# 10

2020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 대학원

---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글로벌골프대학원

---



# I. 일반대학원

## 1. 목적

부산외국어대학의 건학 이념과 대학원의 비전에 입각하여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하고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여 독창적인 연구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혁

- 1959. 12. 24. 학교법인 성지학원 설립 인가
- 1981. 12. 26. 부산외국어대학 설립 인가
- 1982. 3. 12. 개교
- 1988. 11. 30. 대학원 설치 인가  
석사 학위과정 영어영문학과, 법학과(2개 학과, 24명)
- 1989. 3. 3. 대학원 개원  
초대 대학원장 김동선 학장 취임(겸직)
- 11. 6. 석사 학위과정 국어국문학과 신설 인가(3개 학과, 36명)
- 1990. 2. 7. 제2대 대학원장 김동선 학장 취임(겸직)
- 11. 8. 석사 학위과정 독어독문학과, 전산학과, 외교학과, 경영학과 신설 인가(7개 학과, 72명)
- 1991. 2. 7. 제3대 대학원장 이창희 박사 취임
- 22. 석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1명, 법학석사 2명)
- 11. 16. 석사 학위과정 아주지역학과, 불어불문학과 신설 인가(9개 학과, 96명)  
전산학과를 컴퓨터공학과로 명칭 변경
- 1992. 2. 7. 제4대 대학원장 김종헌 박사 취임
- 21. 석사 학위 수여(법학석사 1명)
- 7. 28. 석사 학위과정 언어학과, 무역학과 신설 인가(11개 학과, 120명)
- 8. 21. 석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3명, 법학석사 1명)
- 12. 1. 제5대 대학원장 문영득 박사 취임
- 1993. 2. 26. 석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8명, 정치학석사 2명, 공학석사 3명)
- 9. 4. 석사 학위과정 일어일문학과 신설 인가(12개 학과, 120명)
- 9. 제6대 대학원장 정상진 박사 취임
- 1994. 2. 25. 석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8명, 공학석사 4명)
- 8. 26. 석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2명, 법학석사 1명, 정치학석사 1명)
- 1995. 2. 24. 석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11명, 정치학석사 2명, 경제학석사 1명, 공학석사 1명)
- 8. 25. 석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2명, 경제학석사 1명, 공학석사 2명)
- 1996. 2. 23. 석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8명, 법학석사 2명, 정치학석사 2명, 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4명)
- 3. 20. 제7대 대학원장 김종헌 박사 취임
- 8. 26. 석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8명, 법학석사 1명, 공학석사 1명)
- 11. 2. 박사 학위과정 영어영문학과 신설 인가
- 1997. 2. 21. 석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13명, 정치학석사 3명)
- 8. 22. 석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6명, 경영학석사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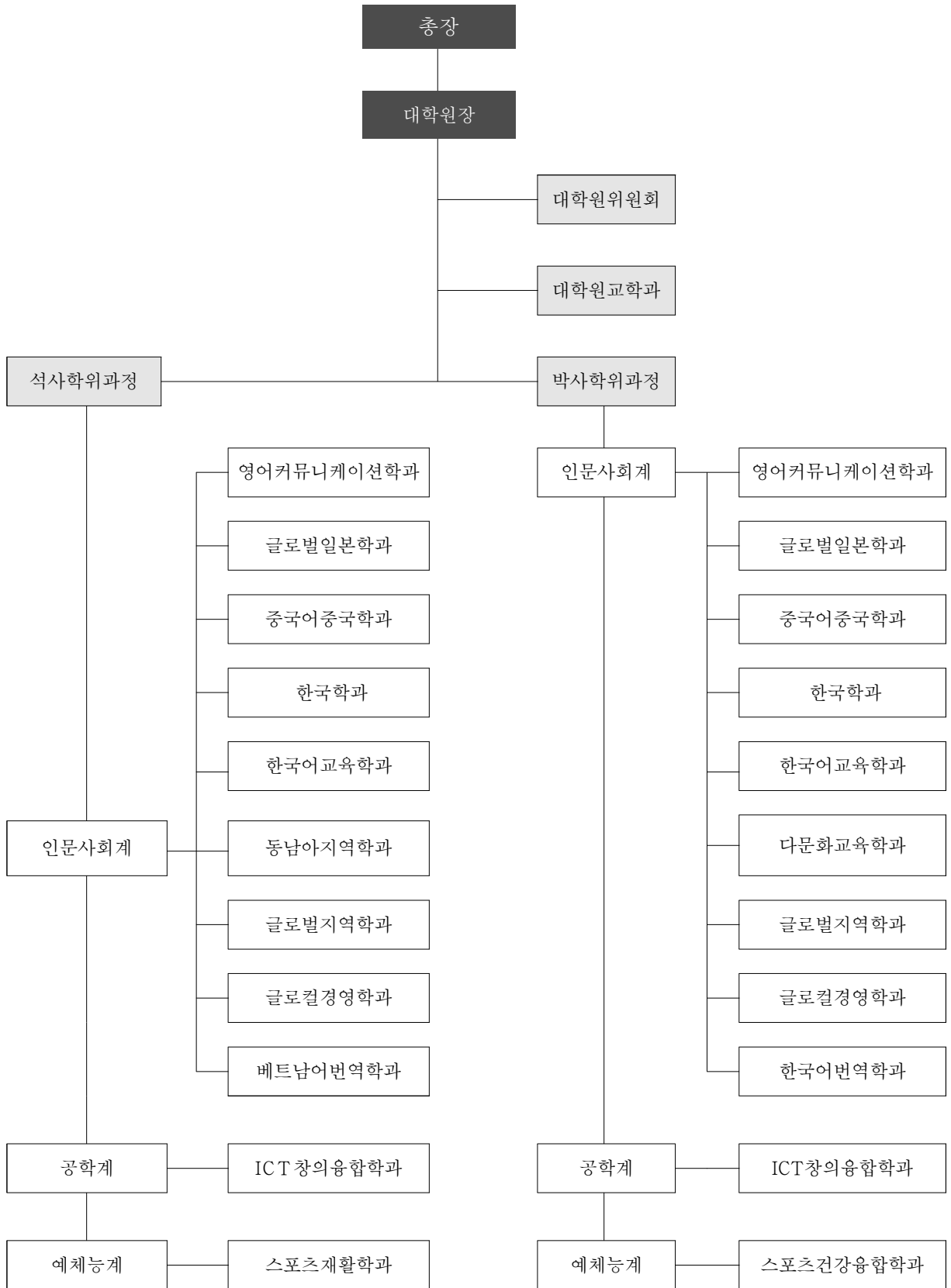
1997. 10. 25. 박사 과정 일어일문학과 신설 인가
1998. 1. 5. 제8대 대학원장 김영길 박사 취임  
8. 21. 석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2명, 정치학석사 2명, 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1명)
1999. 2. 19. 석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7명, 법학석사 1명, 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3명)  
4. 1. 제9대 정상진 박사 취임  
8. 20. 석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6명)  
10. 25. 대학원 종합평가 실시  
11. 2. 석사 학위과정 사회체육학과, 박사 학위과정 전자·컴퓨터공학과 신설 인가
2000. 2. 2. 대학원 종합평가 3개 영역 우수 대학원 선정(교과과정, 수업 및 논문 지도, 재정·경영)  
2. 18. 석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11명, 법학석사 3명, 공학석사 4명)  
8. 18. 석·박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3명, 문학박사 1명)
2001. 2. 16. 석·박사 학위 수여  
(문학석사 6명, 법학석사 3명, 지역학석사 5명, 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3명, 문학박사 2명)  
4. 24. 명예박사 학위 수여(명예정치학 박사 1명, 명예경영학 박사 2명)  
8. 17. 석·박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2명, 문학박사 1명)
2002. 2. 1. 제10대 대학원장 박성환 박사 취임  
15. 석·박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8명, 법학석사 7명, 지역학석사 2명, 경영학 석사 1명, 공학석사 5명, 체육학석사 5명, 문학박사 3명)  
3. 28. 명예박사 학위 수여(명예경영학 박사 1명)  
5. 18. 명예박사 학위 수여(명예정치학 박사 1명)  
6. 4. 명예박사 학위 수여(명예경영학 박사 1명)  
8. 6. 명예박사 학위 수여(명예경영학박사 1명, 명예교육학박사 1명)  
16. 석·박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3명, 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1명)  
10. 31. 석사 학위과정 중국어중국학과, 박사학위과정 법학과 신설 인가
2003. 2. 21. 석·박사 학위 수여(문학석사 12명, 법학석사 2명, 지역학석사 1명, 공학석사 4명, 체육학석사 5명, 문학박사 2명, 공학박사 1명)  
8. 14. 석·박사 학위 수여(문학박사 1명, 문학석사 3명, 공학석사 1명)
2004. 2. 20. 석·박사 학위 수여(문학박사 2명, 문학석사 1명, 법학석사 1명, 공학석사 5명, 체육학석사 4명)  
3. 4. 제11대 대학원장 류종렬 박사 취임  
8. 20. 석·박사 학위 수여(문학박사 1명, 공학박사 2명, 지역학석사 1명, 공학석사 1명)
2005. 2. 18. 석·박사 학위 수여  
(문학박사 2명, 문학석사 7명, 법학석사 2명, 지역학석사 2명, 공학석사 4명, 체육학석사 6명)  
5. 6. 박사 학위과정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신설  
8. 19. 석·박사 학위 수여(문학박사 2명, 공학박사 1명, 문학석사 2명, 지역학석사 1명, 체육학석사 1명)  
11. 1. 석사 학위과정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TESOL학과 신설
2006. 2. 17. 석·박사 학위과정(문학박사 2명, 법학박사 1명, 문학석사 8명, 지역학석사 1명, 법학석사 1명, 정치학 석사 1명, 공학석사 6명, 체육학석사 1명)  
20. 제12대 대학원장 정희자 박사 취임  
8. 18. 석·박사 학위 수여 10명(문학박사 4명, 지역학석사 2명, 한국학석사 3명, 법학석사 1명)  
10. 2. 박사과정 사회체육학과 신설
2007. 2. 13. 석·박사 학위 수여 30명(문학박사 5명, 법학박사 1명, 공학박사 1명, 문학석사 5명, 법학석사 2명, 한국학석사 2명, 공학석사 3명, 체육학석사 11명)  
8. 17. 석·박사 학위 수여 8명(문학박사 1명, 법학박사 1명, 문학석사 2명, 한국학석사 4명)  
11. 21. 석사과정 국제지역학과 신설  
12. 3. 석사과정 비교문학과 신설



2008. 2. 13. 석·박사 학위 수여 21명(문학박사 2명, 문학석사 10명, 한국학석사 1명, 교육학석사 3명, 영어교육학석사 1명, 공학석사 2명, 체육학석사 2명)
3. 1. 제13대 대학원장 김상돈 박사 취임
8. 22. 석·박사 학위 수여 13명(문학박사 1명, 문학석사 2명, 지역학석사 2명, 법학석사 1명, 교육학석사 4명, 영어교육학석사 2명, 공학석사 1명)
9. 10. 명예박사 학위 수여(명예행정학 박사 11명)
2009. 1. 30. 명예박사 학위 수여(명예정치학 박사 1명)
2. 19. 석·박사 학위 수여 17명(교육학박사 1명, 문학석사 5명, 지역학석사 1명, 교육학석사 5명, 영어교육학박사 2명, 공학석사 3명, 체육학석사 2명)
6. 30. 명예박사 학위 수여(명예 행정학 박사 1명)
8. 21. 석·박사 학위 수여 19명(문학박사 1명, 문학석사 2명, 한국학석사 8명, 교육학석사 7명, 체육학석사 1명)
10. 15. 박사과정 국제지역학과 신설
2010. 2. 26. 석·박사 학위 수여 29명(문학박사 3명, 교육학박사 2명, 문학석사 6명, 법학석사 1명, 한국학석사 2명, 교육학석사 7명, 체육학석사 5명, 국제지역학석사 3명)
3. 1. 제14대 대학원장 이용성 박사 취임
8. 19. 석·박사 학위 수여 13명(지역학박사 1명, 한국학석사 4명, 교육학석사 5명, 공학석사 2명, 체육학석사 1명)
20. 석·박사 학위 수여 13명(지역학박사 1명, 한국학석사 4명, 교육학석사 5명, 공학석사 2명, 체육학석사 1명)
9. 14. 석사과정 러시아어과 신설
2011. 2. 20. 석사과정 러시아어과 신설, 석·박사 학위 수여 27명(문학박사 3명, 문학석사 7명, 지역학석사 1명, 교육학석사 10명, 공학석사 1명, 한국학석사 3명, 국제지역학석사 1명, 체육학석사 1명)
8. 19. 석·박사 학위 수여 37명(문학박사 3명, 법학박사 1명, 교육학박사 2명, 체육학박사 2명, 문학석사 7명, 한국학석사 7명, 교육학석사 14명, 체육학석사 1명)
2012. 2. 6. 제15대 대학원장 박종택 박사 취임
24. 석·박사 학위 수여 38명(문학박사 4명, 지역학박사 1명, 교육학박사 3명, 체육학박사 2명, 문학석사 6명, 지역학석사 1명, 한국학석사 3명, 교육학석사 10명, 체육학석사 5명, 국제지역학석사 3명)
8. 17. 석·박사 학위 수여 23명(문학박사 1명, 법학박사 1명, 체육학박사 3명, 문학박사 4명, 한국학석사 3명, 교육학석사 6명, 공학석사 1명, 체육학석사 2명, 국제지역학석사 1명, 문학석사 1명)
10. 17. 제16대 대학원장 최성철 박사 취임
2013. 2. 22. 석·박사 학위 수여 38명(공학박사 1명, 교육학박사 2명, 문학박사 6명, 체육학박사 3명, 공학석사 1명, 교육학석사 13명, 문학석사 7명, 법학석사 1명, 언어학석사 1명, 체육학석사 2명, 한국학석사 1명)
8. 23. 석·박사 학위 수여 24명(문학박사 1명, 지역학박사 2명, 문학석사 3명, 한국학석사 4명, 교육학석사 13명, 국제지역학석사 1명)
2014. 2. 6. 제17대 대학원장 하수권 박사 취임
21. 석·박사 학위 수여 21명(문학박사 1명, 교육학박사 1명, 체육학박사 1명, 문학석사 2명, 지역학석사 1명, 한국학석사 1명, 교육학석사 8명, 체육학석사 5명, 국제지역학석사 1명)
8. 22. 석·박사 학위 수여 19명(문학박사 2명, 교육학박사 1명, 문학석사 5명, 한국학석사 1명, 교육학석사 8명, 국제지역학석사 2명)
2015. 2. 15. 석·박사 학위 수여 24명(문학박사 4명, 교육학박사 1명, 문학석사 4명, 한국학석사 4명, 교육학석사 5명, 체육학석사 3명, 국제지역학석사 3명)
8. 1. 제18대 대학원장 백미혜리박사 취임
21. 석·박사 학위 수여 18명(법학박사 1명, 교육학박사 3명, 문학석사 6명, 한국학 석사 2명, 교육학석사 5명, 국제지역학석사 1명)
2016. 1. 1. 제19대 대학원장 박경수 박사 취임
2. 19. 석·박사 학위 수여 36명(법학박사 1명, 문학박사 10명, 교육학박사 16명, 체육학박사 4명, 국제지역학박사 2명, 경영학박사 7명, 공학박사 7명, 문학석사 9명, 한국학석사 2명, 교육학석사 11명, 체육학석사 5명, 국제지역학석사 4명, 경영학석사 1명, 문학석사 1명)

2016. 8. 19. 석·박사 학위 수여 19명(교육학박사 2명, 문학석사 3명, 한국학석사 2명, 교육학석사 6명, 국제지역학석사 3명, 경영학석사 3명)
2017. 2. 17. 석·박사 학위 수여 30명(문학박사 3명, 교육학박사 2명, 체육학박사 3명, 경영학박사 1명, 공학박사 2명, 문학석사 1명, 한국학석사 2명, 교육학석사 10명, 체육학석사 2명, 국제지역학석사 2명, 경영학석사 2명)
8. 18. 석·박사 학위 수여 30명(문학박사 1명, 교육학박사 5명, 경영학박사 1명, 공학박사 2명, 문학석사 1명, 한국학석사 6명, 교육학석사 10명, 경영학석사 2명, 공학석사 2명)
2018. 2. 23. 석·박사 학위 수여 35명(문학박사 10명, 교육학박사 9명, 체육학박사 4명, 국제지역학박사 3명, 경영학박사 7명, 문학석사 3명, 한국학석사 6명, 교육학석사 16명, 국제지역학석사 6명, 경영학석사 2명, 공학석사 4명)
3. 1. 제20대 대학원장 서상범 박사 취임
8. 17. 석·박사 학위 수여 41명(한국학석사 3명, 교육학석사 13명, 국제지역학석사 5명, 경영학석사 3명, 공학석사 1명, 문학박사 8명, 교육학박사 5명, 체육학박사 1명, 국제지역학박사 1명, 경영학박사 1명)
2019. 2. 1. 제21대 대학원장 권오경 박사 취임
22. 석·박사 학위 수여 31명(문학석사 3명, 한국학석사 2명, 교육학석사 4명, 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11명, 국제지역학석사 2명, 체육학석사 2명, 문학박사 1명, 교육학박사 2명, 국제지역학박사 1명, 경영학박사 2명)
8. 23. 석·박사 학위 수여 25명(한국학석사 4명, 교육학석사 7명, 국제지역학석사 1명, 경영학석사 3명, 공학석사 1명, 문학박사 6명, 교육학박사 1명, 국제지역학박사 2명)
2020. 1. 1. 제22대 대학원장 정우성 박사 취임
2. 21. 석·박사 학위 수여 49명(문학석사 3명, 한국학석사 1명, 교육학석사 10명, 경영학석사 1명, 교육학석사 8명, 공학석사 1명, 국제지역학석사 1명, 체육학석사 20명, 문학박사 6명, 교육학박사 2명, 경영학박사 3명, 체육학박사 1명)
8. 1. 제23대 대학원장 임동우 박사 취임
14. 석·박사 학위 수여 25명(문학석사 2명, 한국학석사 2명, 교육학석사 10명, 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6명, 문학박사 2명, 교육학박사 2명)

3. 조직 기구표



※석사학위과정 - 인문사회계 - 다문화교육학과 추가

#### 4. 대학원 통합 학칙

### 대학원 학칙

제정 : 2005. 11. 1.

개정 : 2006. 2. 3, 2006. 5. 10, 2006. 10. 2, 2007. 10. 26, 2007. 11. 21, 2008. 1. 28, 2008. 8. 13, 2008. 10. 15, 2009. 10. 15, 2010. 9. 17, 2010. 12. 7, 2011. 7. 29, 2012. 11. 1, 2013. 12. 4, 2014. 2. 28, 2014. 10. 21, 2014. 11. 6, 2015. 12. 11, 2017. 3. 1, 2017. 12. 27, 2019. 9. 1, 2019. 12. 17.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2조에 따라 이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대학교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글로벌골프대학원(이하 “각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7.03.01.)

제3조(교육목적)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은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과 대학원의 비전에 입각하여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하고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여 독창적인 연구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2. 교육대학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 그리고 대학원 비전인 ‘문화다양성을 기반 한 국제전문인’ 양성에 입각하여 전인적 인격의 교육전문가, 탐구적 지성의 교육전문가, 국제적 안목의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3. 삭제(2017.03.01.)
4. 통역번역대학원은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과 대학원의 비전에 입각하여 고도의 통번역 실무역량을 토대로 유연한 기술 활용 능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전문교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다각도로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5. 삭제(2015.12.11.)
6. 삭제(2017.03.01.)
7. 삭제(2017.03.01.)
8. 글로벌골프대학원은 골프와 관련된 비즈니스 전반적인 분야를 분석하며, 골프스윙원리, 골프스윙분석, 골프기능성 트레이닝 및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실기 기술을 배워 골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성을 가지며, 골프산업 및 골프 트레이닝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신설 2015.12.11.)
9. 산업·경영대학원은 우리 대학 교육목표인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산학연계형 전문인을 양성하는 특성화 된 대학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실천적 도덕성, 창의적 탐구성, 국제적 전문성을 겸비한 산학 연계형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 가. 삭제(2017.12.27.)
  - 나. 삭제(2017.12.27.)
  - 다. 삭제(2017.12.27.)
  - 라. 삭제(2017.12.27.)

제4조(교육목표) 각 대학원은 제3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 1. 일반대학원

- 가. 다언어·다문화 융합을 지향하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전문지식 심화(개정 2017.12.27.)
- 나. 학부 특성화와 연계된 독창적인 연구능력 함양(개정 2017.12.27.)
- 다. 사회구조와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관·산 협동능력 제고(개정 2017.12.27.)
- 라. 문화 다양성 허브 구축을 통한 고급정보능력 신장(개정 2017.12.27.)

2. 교육대학원

- 가. 사랑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인성 · 품성 함양(개정 2017.12.27.)
- 나. 교육이론 및 교과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기초한 교육현장 활용능력 배양(개정 2017.12.27.)
- 다. 교육현장 맥락에 기반 한 교수 전문성 개발(개정 2017.12.27.)
- 라.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질 개발(개정 2017.12.27.)
- 마. 삭제(2017.12.27.)

3. 삭제(2017.03.01.)

4. 통역번역대학원

- 가. 급증하는 국제교류에 있어 의사소통을 돕는 통역 능력 함양(개정 2017.12.27.)
- 나. 국내외 문화간 중개를 담당하는 번역 능력 함양(개정 2017.12.27.)
- 다. 언어 · 기술 ·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 습득 및 실무 경험 축적(개정 2017.12.27.)
- 라. 삭제(2017.12.27.)

5. 삭제(2015.12.11.)

6. 삭제(2017.03.01.)

7. 삭제(2017.03.01.)

8. 글로벌골프대학원(신설 2015.12.11.)

- 가. 골프산업의 범위와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함양
- 나. 골프스윙 메카니즘의 이해 및 적용능력 함양
- 다. 다양한 골프스윙분석기술의 습득 및 함양
- 라. 신체능력과 골프기술과의 관계에 관한 지식 함양
- 마. 다양한 골프트레이닝 방법 습득과 적용능력 함양

9. 산업 · 경영대학원(신설 2017.03.01.)

- 가. 성실하고 창의적인 지식인 육성(개정 2017.12.27.)
  - 1) 삭제(2017.12.27.)
  - 2) 삭제(2017.12.27.)
  - 3) 삭제(2017.12.27.)
- 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전문인 육성(개정 2017.12.27.)
  - 1) 삭제(2017.12.27.)
  - 2) 삭제(2017.12.27.)
  - 3) 삭제(2017.12.27.)
- 다. 실무에 필요한 이론과 교육능력 함양(개정 2017.12.27.)
  - 1) 삭제(2017.12.27.)
  - 2) 삭제(2017.12.27.)
- 라. 교육현장 실습을 통한 교육의 실용성 강화(개정 2017.12.27.)
  - 1) 삭제(2017.12.27.)
  - 2) 삭제(2017.12.27.)

제5조(학위과정) ①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학위과정을 둔다.

- 1.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개정 2017.12.27.)
- 2. 각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 3. 일반대학원에 학 · 석사연계과정, 학과간 협동과정과 학 · 연 · 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14.10.21.)

② 각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고, 공개강좌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과 · 전공 및 정원)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 · 전공편성 및 학생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7.)

-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개정 2011.07.29., 2017.12.27.)
-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② 석박사통합과정의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이내로 하며, 학과별 최대 허용인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제7조(학위의 종류)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의 학위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수업)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방송통신 및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2.11.01.)

## 제 2 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9조(입학허가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포함)허가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입학자격) ①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7.12.27.)
2.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삭제(개정 2012.11.01.)

③ 교육대학원은 학사과정 전공(부전공 포함)과 동 대학원의 전공분야의 불일치로 인해 교원자격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학할 수 있다.

제11조(입학지원 및 전형) ① 각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7.)

제12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합격 후 소정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3조(외국인학생 입학) ①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외국인 또는 해외 교포로서 각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별도 전형절차를 거쳐 총장이 입학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언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장이 지정하는 한국어강좌를 1학기 이상 이수할 것을 전제로 입학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생 입학) 정부 각 부처의 재직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각 대학원별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11.07.29., 2017.02.27.)

제15조(편입학) 총장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7.)

제16조(재입학)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7.)

##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7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하며, 각 특수대학원은 2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단,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은 2년, 통역번역대학원은 2년,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는 1.5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11.06., 2015.12.11., 2017.03.01.)

② 전항에 있어서의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7.)

- 제18조(재학연한) ①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3년,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01., 2015.12.11., 2017.03.01.)
- ② 각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4년,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1.01., 2017.03.01.)
- ③ 전항에서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등록기간을 말한다.
-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으며, 재학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7.)

##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및 수료

- 제19조(등록) 전형에 합격한 신입생과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 납부 등 등록에 필요한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한 등록금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7.)
- 제20조(등록금의 반환) ① 군 입대 휴학자의 경우 증빙에 의하여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개정 2011.7.29)
- ② 등록금을 납입한 후 일반휴학 및 자퇴할 경우 반환 또는 이월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7.)
- 제21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의 추가연장과 해외지사근무(국내지사 포함), 장기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장기 휴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7.)
- 제22조(복학)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하기 이전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2조의2(전과) 각 대학원의 전과(전공변경 포함)는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09.01.)
- 제23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4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
  3.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4. 대학원위원회의 징계의결로 인하여 제적된 자
- 제25조(수료) ① 수료를 위해서는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 ② 수료의 요건 등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7.)

## 제 5 장 교과와 학점

- 제26조(교과목) 각 대학원의 학과·전공별 교과과정 및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27조(교과목이수계획 지도)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입학 후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 이수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28조(수료 및 이수학점) ①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과정은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하여 26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논문연구 4학점을 포함하여 4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단, 통역번역대학원은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하여 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1., 2015.12.11.)

②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기당 이수학점, 타 대학원과의 학점인정, 대학원과 대학과의 공동수강, 선수과목 이수, 교원자격증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7.)

## 제 6 장 학업성적

제29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성적 등급	점수	평점	성적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C+	75-79	2.5
A	90-94	4.0	C	70-74	2.0
B+	85-89	3.5	F	70 미만	0.0
B	80-84	3.0			

제30조(학점취득) 학점은 성적평점 2.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되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한 전 교과목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31조(재이수)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미 이수한 과목 중 성적평점이 2.5 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이수할 수 있다.

## 제 7 장 자격시험

제32조(구분) ①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대학원의 시험응시자격, 시험의 종류, 시험과목, 실시시기, 재응시, 시험위원과 합격여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7.)

제33조(유효기간)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논문심사 합격시까지로 한다.

## 제 8 장 학위논문

제34조(논문제출 자격) 석사 또는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각 학위과정의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
2. 학업성적이 종합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3.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한 자
6. 이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신설 2014.10.21.)

제3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절차, 시기 및 방법 등에 따른 세부 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7.)

1. 지도교수 선정
2. 논문계획서 제출
3. 논문발표 및 심사
4.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36조(논문심사위원)(개정 2011.07.29.) ① 제출된 학위청구논문은 주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는 3인, 박사학위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과정은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③ 전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④ 심사위원의 자격, 외부인사 위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7.)

제37조(논문심사 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소정기일 내에 각 대학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38조(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관련 학회지 및 국제 학회지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단행본 발간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07.29., 2017.12.27.)

## 제 9 장 학위수여

제39조(학위수여요건)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각 과정별 학위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청구 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07.29., 2017.12.27.)

제39조의2(복수학위 수여) ① 외국대학과의 대학원과정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양 대학은 각각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1.07.29.)

②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07.29.)

제40조(학위기)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 박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하는 학위기를 수여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7.)

제41조(석·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총장은 석·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10 장 명예박사학위

제42조(자격) 학술과 문화에 크게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을 남긴 자에 대하여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3조(수여절차)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장의 추천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44조(학위종별) 명예박사의 학위종별은 이를 받을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 제 11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45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는 각 대학원 정상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과제, 기간 및 수강인원 등 개설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7.)

제46조(연구생) ① 각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각 대학원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④ 학기당 이수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⑥ 수강료, 학기당 이수학점 및 수료학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7.)

## 제 12 장 장학금 및 상벌

- 제47조(장학금) 각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12.27.)
- 제48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 제49조(징계)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효력에 관해서는 이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 제 13 장 학생지도 및 학생활동

- 제50조(학과·전공주임 및 지도교수) ① 각 학과·전공에는 주임교수와 지도교수를 따로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7.)
- ② 학과·전공주임교수는 그 학과·전공의 교수와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교과목의 지도, 논문지도, 기타 수학지도를 한다. 단, 지도교수는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따라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제51조(학칙준수) 학생은 이 대학원 학칙과 각종 내규를 준수하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 제5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기본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53조(원우회)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 각 대학원에 원우회를 둘 수 있다.

## 제 14 장 대학원위원회

- 제5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 일반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으로 한다.
- 제55조(위원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각 대학원별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명예박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6. 이 학칙 제24조 제4호에 관한 사항(내부명시사항)
  7. 공개강좌와 특별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의 지급·보조에 관한 사항
  9.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7조(위원회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일반대학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58조(운영위원회) 각 대학원별 운영에 있어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이외에 세부적 협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7.)

## 제 15 장 학칙개정

제59조(학칙개정절차) ① 위원회에서는 학칙개정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각 대학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총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학칙개정안을 확정한다.

② 삭제(개정 2012.11.01.)

## 제 16 장 기타

제60조(현장실습) ① 국내외의 산업현장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각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기당 학점인정은 9학점 이내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필요한 학점인정기준, 현장실습계획, 성적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7.)

제61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이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62조(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총장이 이를 정한다.

### 부 칙(2005.10.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①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대학원 학칙, 교육대학원 학칙,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 학칙, 통역번역대학원 학칙은 폐지한다.

②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학위수여규정, 대학원입학전형에 관한 규정, 대학원 교과운영 및 논문지도에 관한 세칙, 대학원 선수과목이수규정, 대학원 장학금지급에 관한 내규,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 교육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교과운영 및 논문지도세칙, 입학전형시행세칙, 장학금지급규정, 편입학규정,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 학사내규, 통역번역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조기졸업운영 규정, 교과운영 및 논문지도세칙, 입학전형시행세칙, 장학금지급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일반대학원 학칙, 각 특수대학원 학칙에 의한 당해 대학원의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한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각 대학원별 구 학칙 및 각 규정, 세칙, 내규가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의 시행 당시의 각 대학원 재적생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 및 각 규정, 세칙, 내규를 적용한다.

### 부 칙(2006.02.0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6.05.09.)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국제통상대학원, TESOL대학원 및 정원조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6.09.26.)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사회체육학과 박사과정 신설)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24.)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교육대학원 정원조정 및 전공 폐과·신설, TESOL대학원 정원조정)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0.)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일반대학원 국제지역학과 신설)은 200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25.)

제1조(경과조치) 국제통상대학원으로서의 명칭변경 학칙개정(2006.05.15.)에 따른 학적 변동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① 대학원 명칭의 경우 입학시의 명칭에 따르되 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는 변경된 명칭에 따른다.
- ② 전공의 경우 복학생은 입학시 전공을 적용하며 재입학생은 변경된 현행 전공에서 선택할 수 있다.
- ③ 학위명의 경우 입학시 학칙에 근거한 학위명을 적용한다.
- ④ 이 경과조치는 2007.3.1부터 소급적용 한다.

부 칙(2008.07.30.)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교육대학원 전공 폐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14.)

제1조(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TESOL학과는 재적생이 졸업시까지만 유지되며,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  
② 국제통상경영대학원 명칭은 2009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변경된 전공명은 해당 재적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09.10.13.)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대학원 정원조정, 국지지역학과 박사과정 신설, 비교문학과 명칭변경)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9.14.)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일반대학원 러시아어과 신설)은 2010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07.)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논문제출자격 추가, 석·박사학위수여 취소)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29.)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7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 별표 1 ]의 일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학생정원 변경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국제지역학과 재적생은 글로벌지역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교육대학원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반사회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상업정보교육 전공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1.0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수업연한 변경, [ 별표 1 ]의 학생정원 변경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04.)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28.)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일반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는 석·박사과정에 글로벌경영학전공과 글로벌고위자전공을 두며,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0.2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전자·컴퓨터공학과는 ICT창의융합학과로 국제통상경영대학원의 중국지역통상전공은 한중무역통상경영전공으로 학과(전공)명을 변경하여 2015년 3월 1일 입학자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경과조치) 제34조 6호는 2015년 3월 1일 입학자로부터 작용한다.

부 칙(2014.11.06.)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6조에 따른 대학원 신설·변경·폐지, 학위과정별 학과·전공편성 및 학생정원의 변경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TESOL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동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제통상경영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대학원에, 2018학년도 이후 졸업자부터는 경영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학과 및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러시아어과, 법학과, 비교문학문화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동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일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동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일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제통상경영대학원 아세안지역통상경영전공, 중국지역통상경영전공, 글로벌골프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 까지 동대학원 아세안지역통상경영전공, 중국지역통상경영전공, 글로벌골프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 학칙 시행 이전에 TESOL대학원 TESOL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동대학원 TESOL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⑤ 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재입학의 경우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수료 및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28조의 수료 및 이수학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3.0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6조에 따른 대학원 신설·변경·폐지, 학위과정별 학과·전공편 및 학생정원의 변경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사회체육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 까지 동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산업대학원, 경영대학원, 통합의학대학원의 재적생은 명칭 변경된 산업·경영대학원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시 변경된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의 수업연한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합의학대학원 카이로프랙틱전공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통합의학대학원의 카이로프랙틱전공의 수업연한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의 글로벌지역학과, 언론홍보학과, 산업대학원의 전기전자자동화전공, 어린이영어교육전공, 어린이일본어교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 까지 동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재입학의 경우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수료및이수학점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통합의학대학원의 학칙 제28조의 수료 및 이수학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6조에 따른 대학원별 학과·전공편성 및 학생 정원의 변경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산업·경영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카이로프랙틱전공 재적생은 통합의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유럽지역학과, 지중해지역학과, 중남미지역학과, 동남아시아학과, 러시아·중앙아시아·인도지역학과, 산업·경영대학원의 3D·로봇융합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 까지 동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재입학의 경우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2019.09.0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및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스포츠재활학과,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산업·경영대학원 한베무역통상전공, 경찰행정전공, 어린이중국어교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동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학과(전공) 폐지에 따른 재입학의 경우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학과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일반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재적생은 졸업할 때까지 동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별표 1 ] 각 대학원별 학생정원 및 학위 종류표(개정 2014.10.21., 2015.10.23., 2017.02.15., 2017.12.27., 2019.12.17.)

### 1. 일반대학원

과정별	계열별	학과별	학위 종별	입학 정원(명)	비고
석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	영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학석사	60	
		글로벌일본학과	문학석사		
		중국어중국학과	문학석사, 지역학석사		
		한국학과	한국학석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다문화교육학과	교육학석사		
		동남아시아학과	국제지역학석사		
		글로벌지역학과	국제지역학석사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전공, 글로벌고위자전공)	경영학석사		
		베트남어번역학과	번역학석사		
	공학	ICT창의융합학과	공학석사		
예체능	스포츠재활학과	체육학석사			
소계				60	

과정별	계열별	학과별	학위 종별	입학 정원(명)	비고
박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	영어영문학과	문학박사	34	
		일어일문학과	문학박사		
		중국어중국학과	문학박사, 지역학박사		
		한국학과	한국학박사		
		한국어번역학과	문학박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박사		
		다문화교육학과	교육학박사		
		글로벌지역학과	국제지역학박사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박사		
	공학	ICT창의융합학과	공학박사		
예·체능	스포츠건강융합학과	이학박사			
합계				94	

## 2. 교육대학원

과정	전공별	학위 종별	입학 정원(명)	비고
석사학위과정	베트남어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교육학석사	20	

## 3. 통역번역대학원

과정	전공별	학위 종별	입학 정원(명)	비고
석사학위과정	한영전공 한일전공 한중전공	통역학 석사 번역학 석사 통역번역학 석사	40	

## 4. 산업·경영대학원

과정	전공별	학위 종별	입학 정원(명)	비고
석사학위과정	경영전공(MBA) 세무회계전공 한중무역통상전공 사회복지상담전공 통합의학전공 탐정행정전공 스포츠재활전공 경호무도지도전공	경영학석사 경영학석사 경영학석사 상담학석사 통합의학석사 탐정행정학석사 스포츠의학석사 경호무도학석사	59	

## 5. 글로벌골프대학원

과정	전공별	학위 종별	입학정 원(명)	비고
석사학위과정	골프비즈니스전공 골프과학전공	골프학석사	15	

석제 호

##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00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여 00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00대학원장 학위 ○ ○ ○

위의 증명에 의하여 00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위 ○ ○ ○

학위번호 : 부산외대 (석)



박제 호

##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소 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 장 인

학위번호 : 부산외대 (박) \_\_\_\_\_

명박제 호

##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하여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탁월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이에 이 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명예 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①

위의 증명에 의하여 명예 학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 장 ①

학위번호 : 부산외대 (명박) \_\_\_\_\_

제 호

## 연구 실적 증명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00대학원에서 년 월간을 연구하여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00대학원장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 장 (인)

##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논문 제출자	전공		학번		성명	
지도교수	소속 전공				성명	
논문제목	국문					
	영문					

본인은 학위논문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의 작성에 있어 논문대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서 내용이 허위인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0. . .

서약자: (서명)

확인자: (서명)

(지도교수)

○○ 대학원장 귀하

## 5.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

제정 : 2017. 12. 18.

개정 : 2018. 9. 13, 2018. 11. 7, 2019. 9. 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학원의 학사 업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다.

### 제2장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제3조(지원 절차)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며, 매년 2회(전기, 후기) 실시한다. 후기전형은 전기전형에 결원이 있을 때 시행한다.

②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전공구술시험 및 면접 등의 방법으로 하고, 특별전형은 서류심사로 한다.

③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과 평가항목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④ 전형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5조(합격 기준 및 결정) 입학전형의 합격 기준과 최종 합격자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편입학) ①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동일 계통 학과(전공)나 유사 학과(전공)에 편입학할 수 있다. 단, 전공분야의 유사 여부는 학과(전공)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편입학은 여석이 있는 경우에 2차 또는 3차 학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편입 학기	지원 자격(이수인정 기준)		비고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2	1학기 이상(9학점 이상)	1학기 이상(6학점 이상)	동일 및 유사 학과
	3	2학기 이상(18학점 이상)	2학기 이상(12학점 이상)	
박사과정	2	1학기 이상(9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18학점 이상)		

※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편입생은 2학기 차 교직과목 4학점 이상, 3학기 차 교직과목 8학점 이상 이수 인정 기준 추가

③ 편입학 전형은 특별전형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재입학) ① 제적 또는 자퇴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재입학 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하며, 정원 여석 초과 신청 시 총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한다.

③ 재입학은 원적 학과(전공)에 한하여 허가하며, 제적 또는 자퇴 전에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원적 학과(전공)가 폐과된 경우 학생의 기 이수과목을 참작하여 각 대학원장이 재입학 허용 학과(전공)를 정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8조(학·석사 연계과정생의 선발과 입학) 학·석사 연계과정생의 선발 기준과 전형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선발된 자는 대학원 입학 전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학력 조회) 신·편입학자는 전적 대학교(원)의 학력조회를 거쳐야 한다.

### 제 3 장 수업연한 및 조기졸업

제10조(수업 연한의 단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 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1. 세칙 제19조에 의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 4.3 이상인 자
2. 단, 특수대학원의 경우 4학기 차(교육대학원 비양성과정은 3학기 차) 졸업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로서 학위논문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② 편입학한 자와 학위논문대체자는 수업 연한의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조기졸업 신청) ① 각 대학원의 조기졸업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 2회의 정규 등록, 2학기 차까지 전공 18학점 이상 취득
2. 교육대학원 : 양성과정은 3회의 정규 등록, 3학기 차까지 전공 18학점 이상 취득, 비양성과정은 2회의 정규 등록, 2학기 차까지 전공 18학점 이상 취득
3. 산업·경영대학원과 글로벌골프대학원 : 3회의 정규 등록, 3학기 차까지 전공 21학점 이상 취득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2학기 차 또는 3학기 차 말에 조기졸업 이수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및 수료

제12조(정규 등록) 정규 등록은 수업연한 기간의 등록을 말하며, 각 대학원 학생은 학칙 제19조에 따라 소정의 등록기간에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업연한 이후 등록)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업 연한 이후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14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 학칙 제20조에 따라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반환 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5조(휴학) ① 재학 중 입영, 질병, 가사사정, 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휴학은 각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한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 병역의무, 해외발령, 지방발령, 군입대, 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병가 등의 사유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③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통산하여 최대 4학기(남학생은 2학기) 이내로 휴학할 수 있다.

④ 휴학 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로 하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2항 및 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개강일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 한 경우에는 휴학 사유 발생 일에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경과 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 ⑥ 휴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휴학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⑦ 병역의무로 인해 휴학 사유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휴학사유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각 대학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복학) ① 휴학 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매학기 등록 기간 중에 복학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휴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② 병역 휴학생은 전역 일자가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내일 경우에 전역증을 제시하고 복학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군입대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하여 인정하며, 군입대를 제외한 사유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대체하여 인정한다.

제16조의2(전과) ① 전과(전공변경 포함)는 석사과정에 한하여 허용하며 동일 대학원 학과(전공)간에 전과가 가능하다.

- ② 전과(전공변경 포함)는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학점은 새로운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제청을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 ③ 각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 통폐합이 있을 경우 소속 대학원내에서 학생의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전과를 원하는 자는 전과원서(별지 제21호서식)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9. 09. 01.)

제17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각 대학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5 장 교과과정, 교과목, 학점 인정 등

제18조(교과과정의 편성) ① 각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이 학칙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 전공, 논문연구, 공통선택
  2. 교육대학원 : 전공, 교직공통, 교직선택, 교직기초, 논문연구
  3. 통역번역대학원 :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문연구
  4. 산업·경영대학원 및 글로벌골프대학원 : 전공, 논문연구
- ② 각 과목의 단위 학점은 3학점, 논문연구는 2학점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한다.
1. 일반대학원의 공통선택과목은 1학점으로 한다.
  2. 교육대학원의 교직선택은 2학점, 교직기초는 학점 부여 없이 이수 여부만으로 평가한다. 단, 통역번역대학원의 단위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 ③ 교과과정은 2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통하여 주임교수가 신청하여야 하며, 각 대학원장은 제출된 교과과정의 편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교과과정은 학부의 교과과정과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학과(전공) 교육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⑤ 석·박사학위과정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교과과정은 통합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교과목의 구성과 이수) ① 각 대학원 교과목의 구성 및 이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 가. 석사과정 : 26학점 이상(논문연구 2학점 포함)
  - 나. 박사과정 : 40학점 이상(논문연구 4학점 포함)
  - 다. 석·박사통합과정 : 60학점 이상(논문연구 6학점 포함)

2. 교육대학원

가. 양성과정 : 26학점 이상(교과교육학, 교직공동 각 6학점 및 논문연구 2학점 포함) 단, 재교육과정은 26학점 이상(논문연구 2학점 포함)

나. 논문대체과목 이수자 : 30학점 이상(전공과목 추가 6학점 포함)(개정 2018. 09. 13.)

3. 통역번역대학원

가.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 대체 연구보고서 제출자 : 40학점 이상(공통필수 6학점, 전공필수 32학점, 논문연구 2학점 포함)

나. 논문대체과목 이수자 : 42학점 이상(공통필수 6학점, 전공필수 32학점, 전공선택 4학점 포함)

4. 산업·경영대학원 및 글로벌골프대학원 : 26학점 이상(논문연구 2학점 포함)

가.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 대체 연구보고서 제출자 : 26학점 이상(논문연구 2학점 포함)

나. 논문대체과목 이수자 : 30학점 이상(전공과목 추가 6학점 포함)

② 일반대학원의 타전공 입학자는 전공학점과는 별도로 선수과목을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논문연구 과목은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석사과정은 마지막 학기에 2학점, 박사과정은 마지막 2개 학기에 걸쳐 4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마지막 3개 학기에 걸쳐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논문연구 과목의 평가는 합격(P), 불합격(NP)으로 한다.

④ 외국인 학생에게는 원활한 논문작성을 위해 한국어와 관련한 별도의 공통선택(학문적글쓰기 I, 학문적글쓰기 II) 과목의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특수대학원에서 논문을 대체하여 학점으로 추가 이수하는 자는 논문연구를 제외하고 6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단, 통역번역대학원은 4학점 추가 이수 하여야 한다.

제20조(교과목 개설) ① 교과목은 석·박사학위과정 및 학기차 구분 없이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과목을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연구, 교직기초 및 현지교육실습 과목은 예외로 하며, 필요시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② 주임교수는 다음 학기 개설 과목을 소정 기한 내에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각 학기 수강신청 기간 이전 소정의 기일 내에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강 학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수강 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연구 및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3명 미만인 경우에도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⑤ 학과(전공) 사정에 따라 전일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수강신청) ① 다음 학기 수강교과목은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별 학기당 수강 신청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학기당 9학점, 박사과정은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단, 논문연구 및 선수과목은 제외한다.

2. 통역번역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은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단, 교육대학원의 교직과목은 제외한다.(개정 2018. 09. 13.)

3. 통역번역대학원은 1~2학기 차는 학기당 10학점, 3~4학기 차는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선수과목 및 교직과정의 학점은 별도로 정하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22조(교육실습) ① 교육대학원 재학생 중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습은 학교 현장실습(2학점)과 교육봉사활동(2학점)으로 구분한다.

③ 학교 현장실습은 3학기부터 실시할 수 있고, 4주 이상 학교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 인정 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에서 인정한 보조교사 활동 등 봉사활동 또는 참여관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학교 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은 각각 2학점(60시간)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④ 교육봉사활동(2학점)은 60시간을 기준으로 합격(P), 불합격(NP)로 처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교원자격 무시검정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 과목 전체를 면제하며,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에도 교육실습을 면제한다.
2.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타 대학원과의 학점 인정) ① 각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중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각 대학원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내·외 대학원과의 협정에 의하여 학점교환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이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단, 교육대학원 및 통역번역대학원은 학기당 6학점(교육대학원 비양성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해당 대학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④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단위학점이 각 대학원과 상이한 경우 각 대학원의 단위학점에 준하여 인정한다.

⑤ 대학원생이 각 대학원 학과(전공)의 학생 소속 전공 관련 개설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별 1과목씩 전체 3과목까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전공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총장이 지정하는 한국어 강좌를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 외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학·석사연계과정생의 학부 수강 및 학점 인정)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은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 6 장 선 수 과 목

제25조(선수과목 이수)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자 중 대학의 전공학과와 석사과정의 전공학과가 다른 입학자, 박사과정 입학자 중 석사과정의 전공학과와 박사과정의 전공학과가 다르거나 또는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자는 다음과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선수과목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선수과목 이수에 대한 유사 인정과목의 지정은 학과 주임교수의 인정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3. 선수과목의 신청은 대학에 개설된 과목에서 신청해야 하며,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과목별 성적이 성적이 평점 3.0 미만일 때는 재수강하여야 한다.(개정 2018. 09. 13.)
4. 선수과목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임교수는 선수과목의 과목명을 매학기 초 수강신청 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5. 선수과목 학점은 대학원 수료과정의 학점과는 별도로 처리하며, 대학원 성적평균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6. 지정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제 7 장 자 격 시 험

제26조(자격시험의 구분) ① 일반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외국어시험과 종합 시험으로 한다.

② 특수대학원의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한다. 단, 교육대학원의 외국어표시과목으로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외국어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27조(자격시험 과목) ① 외국어시험의 과목은 학생의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단, 교육대학원은 교사자격증 외국어 표시 과목에 해당하는 외국어로 실시한다.

②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주임교수의 신청에 의하여 각 대학원장이 결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 전공 2과목
2. 교육대학원 : 일반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등 영역별 1과목(비양성과정은 전공 2과목)
3. 통역번역대학원 : 번역시험(한외번역, 외한번역), 순차통역시험(한외순차, 외한순차), 동시통역시험(한외동시, 외한동시)
4. 산업·경영대학원 및 글로벌골프대학원 : 전공 2과목

제28조(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은 1학기 이상 정규 등록한 자
2. 종합시험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학기 이상 정규 등록한 자 단, 통역번역대학원의 종합시험은 3학기 이상 이수하고, 4학기 이상 정규 등록한 자(신설 2018. 11. 07.)

제29조(실시시기) 자격시험은 매 학기 실시하며, 외국어시험은 3월 및 9월에, 종합시험은 4월 및 10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역번역대학원의 종합시험은 보강주간(6월 및 1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응시료) 종합시험에 소정의 응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재응시) 자격시험에 불합격하여 재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학기에 응시료를 납부하고 응시하여야 한다.

제32조(통역번역대학원의 학위종류별 시험) ① 통역번역대학원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1. 번역학 석사 학위 : 번역시험 및 순차통역시험
2. 통역학 석사 학위 : 순차통역시험 및 동시통역시험
3. 통역번역학 석사 학위 : 번역시험, 순차통역시험 및 동시통역시험

② 통역번역대학원의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는 제1항의 학위종류에 따라 학위종별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행정실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시험위원과 합격 여부) ① 자격시험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담당한다.

② 자격시험의 각 과목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며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 일반대학원은 60점 이상, 교육대학원은 70점 이상
2. 종합시험 : 각 과목별 70점 이상(통역번역대학원은 각 과목별 80점 이상)

③ 자격시험 과목 중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에 응시할 수 있다.

## 제 8 장 학위논문

제34조(논문제출 서류) 학위청구 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각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발표) 신청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2. 소정의 심사료
3. 학위청구 삼사용 논문
4.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1부
5. 문장유사도검증프로그램 검증 결과 1부

제35조(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 각 학위과정별 논문연구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는 3학기 또는 4학기 초에 연구제목, 목적, 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며,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연구계획서와 함께 학위논문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과 역할) ①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장은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이 대학교 전임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교내외 교원 중에서

공동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사 및 학업을 지도하고 논문의 연구 및 작성을 지도한다.

제37조(지도교수의 위촉과 변경) ① 논문지도 교수는 2학기 또는 3학기 차에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고 학과(전공)교수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여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지도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교수의 담당학생 수는 매학기 학위과정별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논문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이 학칙 제36조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석사 학위과정은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임교수는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각 대학원장에게 제청하고, 각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한다.

③ 심사위원으로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외부인사는 타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심사위원 중 1인은 주심으로서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 단,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⑤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기간 중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논문심사비 지급)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 논문심사비를 지급한다. 단,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심사를 위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논문작성 사용언어) 논문은 국문 또는 전공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 일문, 중문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논문작성 체제 및 방법) 논문의 규격, 체제 및 작성 방법 등은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42조(논문심사 기간)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3조(공개발표) 논문은 주심의 주관 하에 1회 이상 공개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발표하고 그 결과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논문평가 및 심사횟수) ① 논문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연구방법, 내용의 수준, 체제 및 학문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A, B, C, D로 평가하되, B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 횟수는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회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4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논문제목 변경) 학위청구 논문 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제목변경원을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논문제출 시한) 논문은 석사과정 수료 후 시한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은 최대 3회까지만 허용한다. 단, 수료 후에는 학위논문 대체 이수 및 학위논문 제출을 위하여 추가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47조(논문제출 부수) 합격 판정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이 서명한 3부를 포함하여 소정의 부수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논문심사자료 제출) 위원회는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인용한 문헌 또는 부분, 모형, 표본 등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학위청구논문 외 대체) ① 학위청구논문 외 대체는 특수대학원에 한하여 허용하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학위청구논문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추가학점 이수, 연구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을 추가 학점 이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 외에 전공에서 추가 6학점을 이수하고, 그 취득 평점이 과목별 3.0이상 인 경우. 단, 통역번역대학원은 전공선택에서 추가 4학점을 이수한 경우
2.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대체 이수신청서를 승인 받아 제출한 자

5. 본 대학교에서 지정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6.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 ③ 학위청구논문을 연구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2.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대체 이수신청서를 승인 받아 제출한 자
  5. 본 대학교에서 지정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6.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7. 본 대학교에서 지정하는 문장유사도검증프로그램으로 연구 업적물의 검증 결과 제출이 가능한 자. 단, 연구보고서의 특성에 따라 각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④ 논문 외 추가 학점 이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대체 이수신청서 1부
  2.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1부
  3.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1부
- ⑤ 논문 외 연구업적물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대체 이수신청서 1부
  2. 소정의 심사료
  3. 학위청구 심사용 연구업적물
  4.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1부
  5. 문장유사도검증프로그램 검증 결과 1부
- ⑥ 연구업적 심사위원의 자격 및 구성은 세칙 제38조에 따른다.

## 제 9 장 학위수여

제50조(학위수여 사정) 위원회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을 실시하여 학위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학위복장) ① 석사 및 박사 학위복의 학위종별 후드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② 후드 내부의 색상은 교색으로 한다.

③ 학위모의 수술 색상은 석사모는 학위종별 후드 색상으로 하고, 박사모는 황금색으로 한다.

제52조(공개강좌) ① 이 학칙 제45조에 따라 공개강좌의 과정명, 과목 또는 내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공개강좌 수강을 원하는 자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최고국제경영자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10 장 연구생

제53조(연구생) ① 이 학칙 제46조에 따라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각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③ 학기당 이수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④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연구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 한다.

제54조(연구보조금) 연구능력이 현저히 뛰어나 국내·외 연구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일정 부분의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11 장 현장실습

제55조(정의) 현장실습이라 함은 국내·외의 산업현장 또는 관련기관과의 소정의 협약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56조(교과과정 편성) 교과과정은 현장실습 I(1학기), 현장실습 II(2학기)로 개설하고, 전공선택 과정으로 편성한다.

제57조(신청자격)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재학생으로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 최종 학기의 계절제 참여는 불가하며, 학기제는 졸업사정 기간 전 성적평가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58조(대상업체 추천 및 현장실습 계획서 제출) ① 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과 주임교수는 현장실습 실시 1개월 전에 현장실습대상추천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상업체의 추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산학협력체결 산업체
2. 해당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산업체
3. 기타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③ 학과 주임교수는 산업체와 협의 후 현장실습계획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현장실습 의뢰) 총장은 추천된 대상업체의 장에게 현장실습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0조(대상업체 결정) 대상업체에서 현장실습승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수락했을 때에는 각 대학원과 대상업체 간에 현장실습에 관한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61조(과건학생 지침물 등) 학과 주임교수는 현장실습 과건 학생에게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침 시켜 과건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계획서
2. 현장실습일지
3. 현장실습성적평가서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2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체에 도착한 학생은 도착 즉시 산업체의 장에게 도착신고를 하고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일지(별지 제18호 서식)를 매일 기록하여 현장지도 담당자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실습 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 기간 중 인지의 산업체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3조(현장실습의무 위반자 조치)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 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현장실습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64조(현장실습지도) ① 현장실습생의 지도를 위해 학과별로 지도교수를 둔다.

② 지도교수는 현장을 방문하여 실습생의 작업환경, 근무상태 등을 점검하고 실습생과 산업체의 애로점 및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현장방문 지도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에게는 소정의 지도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① 현장실습 성적은 해당기관의 평가와 현장지도 및 실습일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현장실습성적평가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실습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적평가의 비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체 책임자 평가 : 60%(해외업체 80%)
2. 지도교수 평가 : 40%(해외업체 20%)

③ 현장실습에 의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하고 석사는 최대 9학점, 박사는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학기당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주 - 8주 : 3학점
2. 9주 - 16주 : 6학점

제66조(현장실습 결과보고)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일지 및 봉인된 현장실습성적평가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 주임교수는 현장실습결과보고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 학칙, 이 대학원 학칙, 관련규정 및 현장실습 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부 칙(제정 2017.12.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각 대학원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및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8.09.13.)

제1조(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2018-1학기에 실시한 논문대체이수 및 수강신청은 변경된 세칙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신설 2018.11.07.)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신설 2019.09.01.)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입시전형 구비서류

대학원명	과정	지원 구비서류
일반대학원	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학원서(소정양식) 1부.</li> <li>●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li> <li>●대학졸업(예정) 증명서 1부.</li> <li>●대학 성적증명서 1부.</li> <li>●연구계획서 1부.</li> <li>●경력증명서(해당자) 1부.</li> <li>●한국어교원자격증 및 다문화사회전문가자격증(해당자) 사본 1부.</li> </ul> <p><b>[ 장학금 관련 추가 서류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학금 신청서 1부.</li> <li>●4대 보험 가입확인서(해당자) 1부.</li> <li>●우리 대학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해당자) 1부.</li> </ul>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학원서(소정양식) 1부.</li> <li>●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li> <li>●대학졸업(예정) 증명서 1부.</li> <li>●석사학위 취득(예정) 증명서 1부.</li> <li>●대학 성적증명서 1부.</li> <li>●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li> <li>●연구계획서 1부.</li> <li>●경력증명서(해당자) 1부.</li> <li>●한국어교원자격증 및 다문화사회전문가자격증(해당자) 사본 1부.</li> </ul> <p><b>[ 장학금 관련 추가 서류 ]</b></p>

대학원명	과정	지원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학금 신청서 1부.</li> <li>•4대 보험 가입확인서(해당자) 1부.</li> <li>•우리 대학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해당자) 1부.</li> </ul>
특수대학원	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학원서(소정양식) 1부.</li> <li>•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li> <li>•대학졸업(예정) 증명서 1부.</li> <li>•대학 성적증명서 1부.</li> </ul> <p><b>[ 장학금 관련 추가 서류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학금 신청서 1부.</li> <li>•재직증명서(해당자) 1부.</li> <li>•기타 장학금 증빙 서류 1부.</li> </ul>
외국인	석사 및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학지원서(사진 부착)</li> <li>•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li> <li>•여권 사본</li> <li>•최종학력 졸업증명서(최종학력이 학사인 경우 학사 졸업증명서 제출, 최종학력이 석사인 경우 학사 및 석사 졸업증명서 제출 요망,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li> <li>•최종학력 성적증명서</li> <li>•최종학력 입증서류(기타지역 : 아포스티유, 중국국적 : 학신망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li> <li>•어학능력시험 성적표(TOPIK 등)</li> <li>•신분증(본인 및 부모)</li> <li>•친족관계 공증(원본)</li> <li>•호구부(부모 및 본인 포함 사본)</li> <li>•제정입증서류(국내 은행잔고증명 미화 18000달러 또는 2100만원)</li> <li>•부모 최근 3년 재직 및 소득증명서 각 1부(원본)</li> <li>•여권용 사진 3장</li> </ul>

[ 별표 2 ] 입학전형 방법 및 평가항목 및 배점

1. 일반대학원

가. 평가 방법 : 서류전형, 전공구술시험 및 면접

나. 평가 기준

1) 석사학위과정

구분	배점	평가 내용	평가 방법
서류심사	50점	대학성적(학사과정)	- 평점 평균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전공구술시험	40점	전공학문에 대한 이해도 측정	- 2명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면접	10점	학습계획의 적절성 평가	- 상, 중, 하로 평가하되, 상 10점, 중 8~9점, 하 6~7점으로 평가함. - 2명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가산점	10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 이상 전임교원(10점)</li> <li>- 전문대학 이상 강사 또는 연구원 (경력 3년 이상)(5점)</li> <li>- 초·중등 현직 교사 또는 교직원(5점)</li> <li>-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지원자 : 한국어교원 3급(3점) / 한국어교원 2급(5점)</li> <li>- 다문화교육학과 지원자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5점)</li> </ul>	

2) 박사학위과정

구분	배점	평가 내용	평가 방법
서류심사	50점	대학성적 및 대학원(석사) 성적	- 대학성적 : 20점, 대학원(석사) 성적 : 30점 - 각 학위과정별 성적을 학사 20점, 석사 3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정

구분	배점	평가 내용	평가 방법
전공구술 시험	40점	전공학문에 대한 지식(20) 연구분야에 대한 전망(20)	- 2명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면접	10점	학습계획의 적절성 평가	- 상, 중, 하로 평가하되, 상 10점, 중 8~9점, 하 6~7점으로 평가함 - 2명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가산점	10점 이내	- 전문대학 이상 전임교원(10점) - 전문대학 이상 강사 또는 연구원 (경력 3년 이상) (5점) - 초·중등 현직 교사 또는 교직원(5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지원자 : 한국어교원 3급(3점) / 한국어교원 2급(5점) - 다문화교육학과 지원자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5점)	

※대학 및 대학원 성적의 평균평점 및 전공구술시험의 평균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3) 정원 외 특별전형 평가 기준

정원 외(외국인) 전형평가는 입학 자격과 수학능력을 평가하여 “가”, “부”로 평가하며, 모두 “가”인 경우 입학울 허가한다.

구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서류심사	입학자격	가, 부
전공구술시험	전공학문에 대한 이해	가, 부
면접	학습능력에 대한 평가	가, 부

## 2. 교육대학원

가. 평가 방법 : 서류전형, 전공구술시험 및 면접

나. 평가 기준

구분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방법
서류전형	40점	대학 4년간 전체 성적	▷ 평점 평균을 4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전공구술시험	50점	전공학문에 대한 이해도 측정	▷ 2명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 교육대학원에서 점수 합계 산정
면접	10점	학습계획의 적절성	▷ 상, 중, 하로 평가함(상 10점, 중 8~9점, 하 6~7점)

※대학 성적의 평균평점 및 전공구술시험의 평균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양성과정 지원자를 우선 선발함

다. 가산점 부여

- 1) 현직 교사,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사무직 : 20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자에 한함
- 2) 교직과목 이수정도 : 10점(과목당 1점)
-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자 추가 가산점

구분	항목	가산점	비고
1	한국어교육 전문기관의 강의 경력(연 100시간 이상)	최대 20점	
2	한국어교원 2급	20점	
3	학부과정 주·복수전공자	20점	
4	학부과정 부전공자	10점	
5	한국어교원 3급	10점	
6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이수자	5점	



※① ~ ⑥의 가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4) 1), 3)의 가산점 부여는 최대 20점까지만 부여한다.

**라. 정원 외 특별전형 평가 기준**

정원 외(외국인) 전형평가는 입학 자격과 수학능력을 평가하여 “가”, “부”로 평가하며, 모두 “가”인 경우 입학을 허가한다.

구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서류심사	입학자격	가, 부
전공구술시험	전공학문에 대한 이해	가, 부
면접	학습능력에 대한 평가	가, 부

**3. 통역번역대학원**

필기시험			구술시험 및 면접		
구분	시간	배점	구분	시간	배점
한외 번역	60분	50점	구술	1인당 3-5분	100점
외한 번역	60분	50점	면접	1인당 3-5분	50점
계		100점			150점

가. 번역시험은 한국어 문제를 외국어(영, 일, 중 가운데 택1)로, 외국어(영, 일, 중 가운데 택1) 문제를 한국어로 60분 내에 번역

나. 구술시험은 외국어 시험, 한외 또는 외한 통역 시험 등 방식으로 진행

다. 필기시험, 구술시험 및 면접을 종합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

**4. 기타 특수대학원**

**가. 정원내**

구분	배점	평가 내용	평가 방법
서류심사	50점	대학성적(학사과정)	평점 평균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면접	50점	전공학문에 대한 이해 및 학습능력에 대한 평가	2명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나. 정원외**

정원외(외국인) 전형 평가는 입학자격과 수학능력을 평가하여 “가”, “부”로 평가하며, 모두 “가”인 경우 합격을 허가함

구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서류심사	입학자격	가, 부
전공구술시험	전공학문에 대한 이해	가, 부
면접	학습능력에 대한 평가	가, 부

※대학 및 대학원 성적의 평균평점 및 전공구술시험의 평균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별표 3 ] 등록금 반환 및 복학시 등록금 대체 · 인정

1. 등록금 반환 기준(제18조 제2항 관련)(개정 2011.07.29.)

- 1) 당해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2)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2. 복학시 등록금(제23조 제2항 관련)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대체 · 인정한다.

휴학 일시	대체 · 인정 금액
수업일수 1/4 이전	등록금의 전액
수업일수 1/4경과후부터 수업일수 1/3경과 전	등록금의 2/3
수업일수 1/3경과후부터 수업일수 1/2경과전	등록금의 1/2
수업일수 1/2경과후	등록금 전액납부필

[ 별표 4 ] 각 대학원별 학위 종별 후드 색상표

가. 후드 색상

대학원별	후드 색상	비고
일반대학원	가. 문학, 한국학 - 흰색 나. 법학 - 진자주색 다. 지역학, 정치학 - 남색 라. 경영학 - 담갈색 마. 경제학 - 진밤색 바. 교육학 - 하늘색 사. 공학 - 오렌지색 아. 체육학 - 황록색 자. 이학 - 노란색	
교육대학원	가. 교육학 - 하늘색	
통역번역대학원	가. 통역학, 번역학, 통역번역학 - 흰색	
산업·경영대학원	가. 경영학석사 - 담갈색 나. 경찰학석사 - 파란색 다. 상담학석사 - 담황색 라. 공학석사 - 주황색 마. 교육학석사 - 하늘색 바. 통합의학석사 - 초록색	
글로벌골프대학원	가. 골프학석사 - 황록색	

나. 후드 내부의 색상은 교색으로 한다.

다. 학위모의 수술 색상은 석사모는 학위종별 후드 색상으로 하고, 박사모는 황금색으로 한다.

재 입 학 원 서			
대 학 원		석사/박사	성 명
학 과 ( 전 공 )			
학 번		학 기 차	
생 년 월 일		E - Mail	
전 화	자 택)	휴대폰)	
주 소	(우) -		
제 적 일 자		제 적 사 유	
<p>위 사유로 제적되었던 바                      학년도 제    학기에 재입학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 청 인 :                      ①</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주임교수 :                      ①</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50px; font-weight: bold;">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 첨부서류: 성적증명서 -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휴 학 신 청 서				
대 학 원		석사/박사	성 명	
학 과(전공)				
학 번			학 기 차	
생 년 월 일			E - Mail	
주 소	(우)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휴 학 사 유	<input type="checkbox"/> 병무 <input type="checkbox"/> 가사사정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기타(        )			
휴 학 기 간 (일자미기재)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20 . . . ~ 20 . . . )			
<p>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 청 인:            ①</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주임교수:           ①</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100px; font-weight: bold;">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 병무휴학자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휴학연장신청서				
학 과		석사/박사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생 년 월 일			E - Mail	
주 소	(우)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연장전사유		연장전기간 (일자미기재)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20 . . . ~ 20 . . . )	
연 장 사 유	<input type="checkbox"/> 가사사정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연 장 기 간 (일자미기재)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20 . . . ~ 20 . . . )			
<p>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 청 인:                    ①</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주임교수:                   ①</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100px; font-weight: bold;">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휴학사유변경신청서				
학 과		석사/박사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생 년 월 일			E-Mail	
주 소	(우)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휴학변경사유	<input type="checkbox"/> 현역입영(육군·해군·공군) <input type="checkbox"/> 공익근무요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입 대 일		제 대 예 정 일		
휴 학 기 간 ( 미 기 재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p>위와 같이 휴학사유를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청 인:                    ①</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50px;">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복학신청서				
학 과		석사/박사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생 년 월 일			E-Mail	
주 소	(우)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복 학 사 유	<input type="checkbox"/> 제대(제대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가사회복 <input type="checkbox"/> 건강회복 <input type="checkbox"/> 기타(   )			
휴 학 기 간 ( 미 기 재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학기간)			
<p>위와 같은 사유로 복학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청 인:                    Ⓜ</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50px;">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 제출서류 (병역휴학자):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전역증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자 퇴 신 청 서				
학 과		석사/박사	학 번	
성 명			학 기 차	
생 년 월 일			E-Mail	
주 소	(우) -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사 유				
등록금 환불 여부(미기재)	<input type="checkbox"/> 환불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환불 미대상자	환불비율	등록금의 _ 분의 _	
위와 같은 사유로 자퇴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주임교수 :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 제출서류 (등록금환불대상자) : 은행계좌 사본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조기졸업이수신청서

학과(전공)		성명	
학기차			

대학원 학칙 대학원 시행세칙 제11조에 의거 조기졸업이수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주임교수:          Ⓜ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												
인 정 학 기		20    학년도    제    학기										
학과				석사/박사	학기차				학    번			
성명					생    년    월    일							
구분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교류협정 <input type="checkbox"/> 유학 <input type="checkbox"/> 연수					전화번호						
수학기간	~    ( 학기간 )					대 학 명						
						국 가 명						
타 대학원 이수사항												
타 대학원 이수과목					이 대학원 학점 및 성적인정 교과목					비고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점수	등급	인정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점수	등급			
학점계					학점계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 제24조에 의거 타대학원 학점 이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20    년    월    일                           신 청 인 :                    ①인                           주임교수 :                    ①인                     </div>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성적증명서(해당 대학원) 1부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 성적증명서(해당 대학원) 1부  
 2. 해당학과 교수회의록 1부(타대학원 이수과목과 이 대학원 교과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논문연구 계획서						
학과( 전공 )		석사/박사	학번		성명	
논문제목						
○ 연구목적						
○ 연구방법 및 개요						
연구 일정( ~ )	연구 내용	비고				
논문발표( 공개발표 ) 예정일자						
참고문헌 목록						
위와 같이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인)  지   도   교   수:       (인)  주   임   교   수: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학과(전공)		학번		성명	
지도교수	소속 전공			성명	
논문제목	국문				
	영문				

본인은 학위논문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의 작성에 있어 논문대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확인자:                    Ⓜ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h2 style="margin: 0;">논문제목변경신청서</h2>				
학 과(전공)		석사/박사	학 번	
성 명		전 화 번 호		
당 초 논문 제목				
변경된 논문 제목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논문제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p> <p style="text-align: right;">지 도 교 수:         Ⓜ</p> <p style="text-align: right;">주 임 교 수:         Ⓜ</p>  <p style="text-align: left;">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p>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b>학위청구논문 심사(발표)신청서</b>			
과 정		구 분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input type="checkbox"/> 수료생
학과(전공)		학 번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우) -		
발표예정일	년 월 일	발표장소	
논문 제목			
<p><b>※ 확인기재사항</b></p> <p>1. 취득학점: 전공과목      학 점 (평균 평 점- /4.5)                            선수과목      학 점 (평균 평 점- /4.5)</p> <p>2.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 / 종합시험( )</p> <p>3. 신청구분: 금번학기 신청자( ) / 이전학기 보유자( )                            보유학년도-   년도 학기</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학위청구논문을 심사(발표)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 청 인: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지 도 교 수: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주 임 교 수:        Ⓜ</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100px;"><b>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b></p>			

◆ 논문심사료 - 석사과정 : 12만원  
 박사과정 : 50만원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h2 style="margin: 0;">지도교수변경신청서</h2>					
학과(전공)		석사/박사	학번		성 명
지도교수 변경 사항					
변 경 전	①	변 경 후	①		
변 경 일 자					
변 경 사 유	<p>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①</p> <p style="text-align: right;">주 임 교 수:       ①</p>   <p>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p>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학위종별신청서

(            )학년도    전기    후기 (학년도 미기입, 전기/후기를 체크)

전	공		학	번	
성	명		연락처 (HP)		

대학원 통합 시행세칙 제33조의 2항(학위종별 신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위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 택일)

1. 번역학석사            (    )
2. 통역학석사            (    )
3. 통역번역학석사      (    )
4. 학위종류 신청 유보 (다음 학기에 종합시험 응시예정)      (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 현장실습대상 추천서

대 상 업 체	산 업 체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실 습 대 상 자	학 년	성 명	학 번	실 습 기 간

위와 같이 현장실습 대상업체와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20 . . . .

주임교수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 현장실습 계획서

학 부 ( 과 )		지도교수	(인)
산 업 체 명			
산 업 체 주 소		전화번호	
현장실습 계획			
교 과 목 명		실습기간	
실 습 생			
현장실습 과제			

## 현장실습 승인서

귀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 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승낙합니다.

산 업 체 명	실 습 부 서	실 습 학 생	실 습 기 간	기타(지시할 사항)

20 . . .

산업체기관명 (직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 현장실습 일지

실 습 일 자	20 년 월 일( 요일)	확 인	지도담당	부 서 장
실 습 학 생				
실 습 부 서		근무시간	시 ~ 시	
실 습 개 요				
실 습 기 자 재 명				
실 습 내 용				
실 습 결 과 자 기 소 견				

## 현장실습성적 평가서

학과(전공)		학번		학기차	
성명		교과목명		실습기간	

● 성적평가

산업체 평가			대학 평가		
평가 구분	성 적		평가 구분	성 적	
	만점	평가		만점	평가
성실성 (실습태도 등)	15		실습일지 기록평가	20	
협동성 (인화, 협조, 인간관계등)	15		부과한 과제평가	10	
창의성 (적극성, 개척의욕 등)	15		현장지도 평가	10	
성취도 (실습결과 등)	15		계	40	
계	60		종합평가		
종합평가(특기사항)			산업체 평가	점	
			대학 평가	점	
			계	점	
			학점 사정		
			학 점	성 적	
			학점	점	
20 . . .			지도교수	학부(과)장	
평가자 (인)			(인)	(인)	
산업체장 직인					

## 현장실습결과 보고서

● 교과목명 :

학 번	성 명	산업체명	실습기간	학 점	성 적
총 원	명				

위와 같이 현장실습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 . . .

주임교수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 전과원서

대 학 원		성 명	
과 정		학 기 차	
학 과(전공)		생 년 월 일	
학 번		자 택)                      휴대폰)	
전 화	(우) -		
주 소			
전과 사유			
위 사유로 아래와 같이 전과를 희망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희망학과(전공)	대학원	학과(전공)	
<p>첨 부 : 전과원서, 성적증명서 각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_____(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주임교수 : _____(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p>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II. 교육대학원

### 1. 목적

교육대학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 그리고 대학원 비전인 '문화다양성을 기반 한 국제전문인' 양성에 입각하여 전인적 인격의 교육전문가, 탐구적 지성의 교육전문가, 국제적 안목의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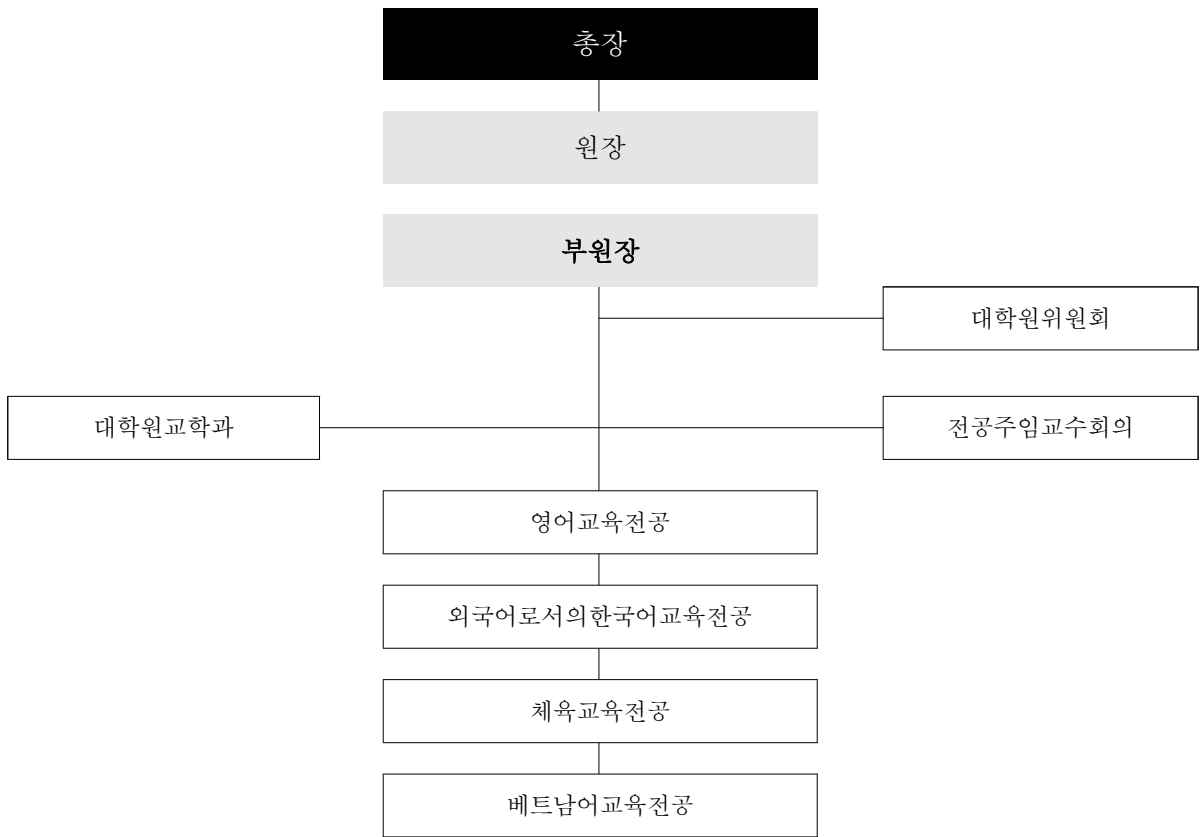
- 1959. 12. 24. 학교법인 성지학원 설립 인가
- 1981. 12. 26. 부산외국어대학 설립 인가
- 1982. 3. 12. 개교
- 1989. 12. 30. 교육대학원 설치 인가  
영어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신설 인가(3개 전공, 60명)
- 1990. 3. 3. 교육대학원 개원  
초대 교육대학원장 김동선 학장 취임(겸직)
- 1991. 2. 7. 제2대 교육대학원장 이창희 박사 취임  
11. 18. 독어교육전공, 상업교육전공 신설 인가(5개 전공, 90명)
- 1992. 2. 7. 제3대 교육대학원장 김종헌 박사 취임  
26. 교육학석사 12명(국어교육 3명, 영어교육 5명, 일반사회교육 4명) 학위 수여  
8. 21. 교육학석사 6명(국어교육 3명, 영어교육 3명) 학위 수여  
9. 1. 수학교육전공 신설 인가(6개 전공, 105명)  
12. 1. 제4대 교육대학원장 문영득 박사 취임  
8. 27. 교육학석사 8명(국어교육 3명, 영어교육 5명) 학위 수여  
9. 6. 일어교육전공 신설 인가(7개 전공, 125명)  
9. 제5대 교육대학원장 정상진 박사 취임
- 1993. 2. 25. 교육학석사 5명(국어교육 1명, 영어교육 1명, 일반사회교육 3명) 학위 수여  
8. 26. 교육학석사 29명(국어교육 8명, 영어교육 8명, 독어교육 1명, 일반사회교육 5명, 상업교육 7명) 학위 수여
- 1994. 2. 24. 교육학석사 12명(국어교육 1명, 영어교육 2명, 독어교육 2명, 일반사회교육 3명, 상업교육 4명) 학위 수여  
5. 30. 교육대학원 부설 중등교원연수원 설치  
8. 25. 교육학석사 23명(국어교육 9명, 영어교육 3명, 독어교육 1명, 일반사회교육 7명, 수학교육 2명) 학위 수여
- 1995. 2. 23. 교육학석사 9명(국어교육 4명, 영어교육 2명, 일반사회교육 1명, 상업교육 1명) 학위 수여
- 1996. 3. 20. 제6대 교육대학원장 김종헌 박사 취임  
8. 26. 교육학석사 17명(국어교육 4명, 영어교육 4명, 일어교육 3명, 일반사회교육 2명, 상업교육 3명, 수학교육 1명) 학위 수여  
10. 30. 체육교육전공, 전산교육전공 신설 인가(9개 전공, 80명)
- 1997. 2. 21. 교육학석사 9명(영어교육 2명, 독어교육 1명, 일어교육 3명, 일반사회교육 3명) 학위 수여  
8. 22. 교육학석사 17명(국어교육 6명, 영어교육 4명, 일어교육 2명, 일반사회교육 1명) 학위 수여
- 1998. 1. 5. 제7대 교육대학원장 김영길 박사 취임  
2. 20. 교육학석사 11명(국어교육 3명, 영어교육 3명, 일어교육 1명, 일반사회교육 2명, 상업교육 2명) 학위 수여  
8. 21. 교육학석사 30명(국어교육 4명, 영어교육 8명, 일어교육 6명, 일반사회교육 6명, 수학교육 6명) 학위 수여



1999. 2. 19. 교육학석사 23명(국어교육 1명, 영어교육 7명, 일어교육 2명, 일반사회교육 6명, 상업교육 1명, 수학교육 6명) 학위 수여
4. 1. 제8대 교육대학원 정상진 박사 취임
8. 20. 교육학석사 44명(국어교육 4명, 영어교육 11명, 일어교육 4명, 일반사회교육 3명, 상업교육 4명, 수학교육 5명, 전산교육 4명, 체육교육 9명) 학위 수여
11. 17. 교육대학원 종합평가 실시
19. 역사교육전공 신설 인가(10개 전공, 100명)
2000. 2. 18. 교육학석사 5명(국어교육 3명, 수학교육 1명, 체육교육 1명) 학위 수여
8. 18. 교육학석사 39명(국어교육 6명, 영어교육 8명, 일어교육 3명, 수학교육 5명, 전산교육 6명, 체육교육 11명) 학위 수여
2001. 2. 16. 교육학석사 26명(국어교육 3명, 영어교육 6명, 독어교육 3명, 일어교육 1명, 일반사회교육 2명, 수학교육 2명, 전산교육 3명, 체육교육 6명) 학위 수여
8. 17. 교육학석사 47명(국어교육 7명, 영어교육 7명, 독어교육 1명, 일어교육 5명, 일반사회교육 3명, 수학교육 7명, 전산교육 3명, 체육교육 14명) 학위 수여
9. 8. 상업교육, 전산교육이 상업정보교육, 정보·컴퓨터교육으로 명칭 변경 인가
2002. 2. 1. 제9대 교육대학원장 박성환 박사 취임
15. 교육학석사 12명(국어교육 4명, 일어교육 1명, 수학교육 3명, 전산교육 1명, 체육교육 3명) 학위 수여
8. 16. 교육학석사 76명(국어교육 8명, 영어교육 13명, 일어교육 7명, 일반사회교육 6명, 역사교육 1명, 수학교육 12명, 전산교육 13명, 체육교육 16명) 학위 수여
11. 12.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신설 인가(11개 전공, 110명)
2003. 2. 21. 교육학석사 12명(국어교육 3명, 영어교육 5명, 일어교육 1명, 상업교육 1명, 체육교육 2명)
8. 14. 교육학석사 56명(국어교육 6명, 영어교육 11명, 일어교육 8명, 일반사회교육 1명, 수학교육 13명, 전산교육 1명, 체육교육 16명)
2004. 2. 20. 교육학석사 22명(국어교육 5명, 영어교육 9명, 일어교육 2명, 일반사회교육 2명, 전산교육 2명, 체육교육 2명)
3. 4. 제10대 교육대학원장 류종렬 박사 취임
8. 20. 교육학석사 74명(국어교육 10명, 영어교육 10명, 일어교육 9명, 일반사회교육 6명, 전산교육 1명, 체육교육 14명, 정보컴퓨터교육 11명, 수학교육 7명, 상업정보교육 1명, 상업교육 1명, 역사교육 1명) 학위 수여
2005. 2. 18. 교육학석사 14명(국어교육 3명, 영어교육 2명, 일어교육 4명, 역사교육 1명, 수학교육 2명, 정보컴퓨터교육 1명, 체육교육 1명) 학위 수여
8. 19. 교육학석사 88명(국어교육 13명, 영어교육 19명, 독어교육 1명, 일어교육 7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6명, 일반사회교육 5명, 상업정보교육 2명, 수학교육 12명, 정보·컴퓨터교육 8명, 체육교육 15명) 학위 수여
2006. 2. 17. 교육학석사 16명(국어교육 5명, 영어교육 2명, 독어교육 1명, 일어교육 3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1명, 일반사회교육 2명, 수학교육 2명) 학위 수여
20. 제11대 교육대학원장 정희자 박사 취임
8. 18. 교육학석사 89명(국어교육 14명, 영어교육 12명, 일어교육 11명,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0명, 일반사회교육 6명, 수학교육 12명, 정보·컴퓨터교육 12명, 체육교육 12명) 학위 수여
2007. 2. 13. 교육학 석사 8명(영어교육 4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1명, 정보·컴퓨터교육 1명, 체육교육 2명)
8. 17. 교육학 석사 96명(국어교육 11명, 영어교육 20명, 일어교육 15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5명, 일반사회교육 7명, 상업정보교육 1명, 수학교육 15명, 정보컴퓨터교육 9명, 체육교육 13명)
10. 26. 정보컴퓨터교육전공 폐과, 교육행정전공 신설 인가(11개 전공, 90명)
2008. 2. 13. 교육학석사 9명(국어교육 1명, 독어교육 1명, 일어교육 1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2명, 역사교육 1명, 체육교육 3명)
3. 1. 제12대 교육대학원장 김상돈 박사 취임

2008. 8. 22. 교육학석사 79명(국어교육 14명, 영어교육 17명, 일어교육 12명, 외국어로서한국어교육 5명, 일반사회교육 5명, 상업정보교육 3명, 역사교육 2명, 수학교육 19명, 체육교육 2명)  
28. 독어교육전공, 교육행정전공 폐과
2009. 2. 19. 교육학석사 12명(국어교육 3명, 영어교육 3명, 일반사회교육 1명, 외국어로서한국어교육 3명, 수학교육 2명)  
9. 24. 교육대학원 입학정원 조정(9개 전공, 70명)
2010. 3. 1. 제13대 교육대학원장 이용성 박사 취임  
8. 20. 교육학석사 24명(국어교육 5명, 영어교육 5명, 일어교육 5명, 외국어로서한국어교육 3명, 수학교육 6명)
2011. 2. 20. 교육학석사 16명(영어교육 7명, 외국어로서한국어교육 6명, 수학교육 3명)  
8. 19. 교육학석사 39명(국어교육 1명, 영어교육 7명, 일어교육 7명, 상업정보교육 1명, 수학교육 3명, 체육교육 13명, 외국어로서한국어교육 7명)  
9. 29.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상업정보교육 폐과
2012. 2. 6. 제14대 교육대학원장 박종탁 박사 취임  
8. 24. 교육학석사 12명(영어교육 4명, 일어교육 1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6명, 체육교육 1명)  
8. 17. 교육학석사 15명(국어교육 1명, 영어교육 5명, 일어교육 1명, 역사교육 1명, 수학교육 2명, 체육교육 3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2명)  
10. 17. 제15대 교육대학원장 최성철 박사 취임
2013. 2. 22. 교육학석사 8명(국어교육 1명, 영어교육 3명, 일어교육 1명, 상업정보교육 1명, 수학교육 1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1명)  
8. 23. 교육학석사 19명(영어교육 10명, 일어교육 3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1명, 체육교육전공 5명)
2014. 2. 21. 교육학석사 8명(국어교육 1명, 영어교육 3명, 일어교육 1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1명, 상업정보교육 1명, 수학교육 1명)  
8. 22. 교육학석사 9명(국어교육 1명, 영어교육 1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3명, 수학교육 4명)
2015. 2. 13. 교육학석사 6명(영어교육 1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1명, 수학교육 1명, 체육교육 3명)  
8. 1. 제16대 교육대학원장 백미혜리 박사 취임  
21. 교육학석사 11명(국어교육 1명, 영어교육 5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1명, 수학교육 1명, 체육교육 3명)
2016. 1. 1. 제17대 교육대학원장 박경수 박사 취임  
2. 19. 교육학석사 15명(영어교육 4명, 체육교육 8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3명)  
8. 19. 교육학석사 24명(영어교육 6명, 일어교육 1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11명, 체육교육 6명)
2017. 2. 13. 교육학석사 11명(국어교육 1명, 영어교육 7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1명, 수학교육 2명)  
8. 17. 교육학석사 11명(영어교육 2명, 일어교육 1명, 체육교육 4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9명)
2018. 3. 1. 제18대 교육대학원장 서상범 박사 취임  
8. 17. 교육학석사 9명(영어교육 4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3명, 베트남어교육 2명)
2019. 2. 1. 제19대 교육대학원장 권오경박사 취임  
22. 교육학석사 23명(영어교육 1명, 베트남어교육 1명, 체육교육 1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20명)  
8. 23. 교육학석사 12명(베트남어교육 4명, 체육교육 2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6명)
2020. 1. 1. 제20대 교육대학원장 정우성 박사 취임  
2. 21. 교육학석사 8명(베트남어교육 1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7명)  
8. 1. 제21대 대학원장 임동우 박사 취임  
14. 교육학석사 5명(베트남어교육 1명, 체육교육 2명,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2명)

3. 조직 기구표



### Ⅲ. 통역번역대학원

####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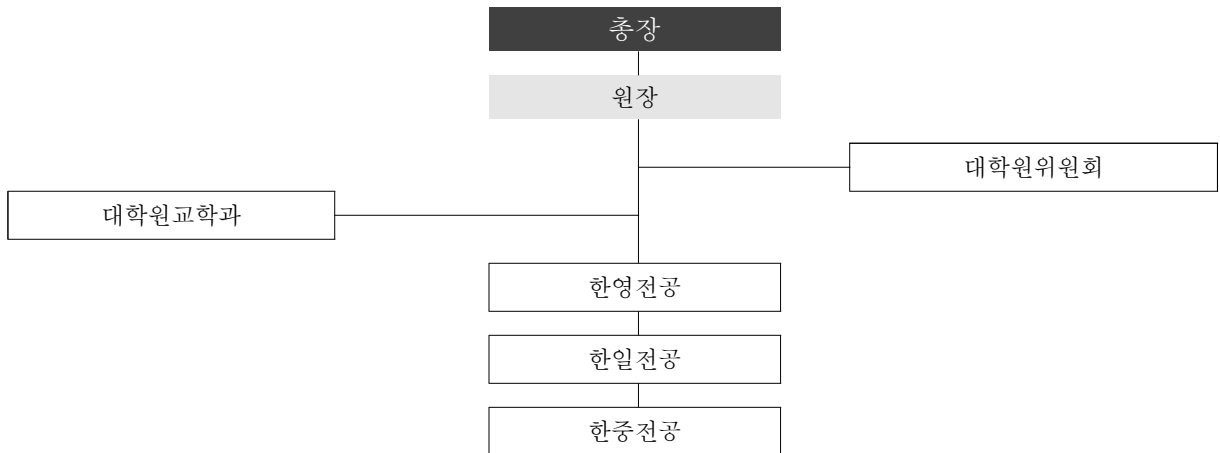
통역번역대학원은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과 대학원의 비전에 입각하여 고도의 통번역 실무역량을 토대로 유연한 기술 활용 능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전문교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다각도로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혁

- 1959. 12. 24. 학교법인 성지학원 설립 인가
- 1981. 12. 26. 부산외국어대학 설립 인가
- 1982. 3. 12. 개교
- 2002. 10. 31. 통역번역대학원 설치 인가  
통역번역학 석사 학위과정  
한·영, 한·일, 한·중, 한·영·일, 한·영·중(5개 전공, 40명)
- 11. 1. 초대 통역번역대학원장 이용성 박사 취임
- 2003. 3. 1. 신입교수 임용  
한영전공 : 류현주 교수 / 한일전공 : 이유아 교수 / 한중전공 : 김아영 교수
- 3. 통역번역대학원 개원
- 6.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이하 BEXCO) 자매 결연 -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2004. 3. 1. 신입교수 임용  
한영전공 : 김도훈 교수 / 한일전공 : 미즈누마 교수
- 2005. 8. 19.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4명, 통역번역학석사 4명)
- 2006. 2. 17.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3명, 통역번역학석사 4명)
- 20. 제2대 통역번역대학원장 임은규 교수 취임
- 8. 18.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5명, 통역번역학석사 6명)
- 2007. 2. 13.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5명, 통역번역학석사 3명)
- 8. 17.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9명, 통역번역학석사 11명)
- 2008. 2. 13. 석사 학위 수여(통역번역학석사 5명)
- 3. 3. 제3대 통역번역대학원장 진광호 교수 취임
- 8. 22.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4명, 통역번역학석사 6명)
- 2009. 2. 20.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11명, 통역번역학석사 2명)
- 8. 21.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20명, 통역번역학석사 8명)
- 2010. 2. 26.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6명, 통역번역학석사 4명)
- 3. 1. 제4대 통역번역대학원장 고영근 교수 취임
- 8. 20.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3명, 통역번역학석사 3명)
- 2011. 2. 18.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5명, 통역번역학석사 5명)
- 8. 19.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5명, 통역번역학석사 4명)
- 2012. 2. 6. 제5대 통역번역대학원장 이정원 교수 취임
- 24.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2명, 통역번역학석사 3명)
- 8. 17.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4명, 통역번역학석사 7명)

- 2013. 2. 22.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1명, 통역번역학석사 1명)
- 8. 23.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6명, 통역번역학석사 8명)
- 2014. 2. 21.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3명, 통역번역학석사 2명)
- 3. 1. 제5대 통역번역대학원장 하수권 교수 취임
- 8. 1. 제6대 통역번역대학원장 백미혜리 교수 취임
- 8. 22.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13명, 통역번역학석사 13명)
- 2015. 2. 13.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12명, 통역번역학석사 8명)
- 8. 21.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5명, 통역번역학석사 7명)
- 2016. 1. 1. 제7대 통역번역대학원장 김창호 박사 취임
- 2. 19. 석사 학위 수여(통역번역학석사 5명)
- 8. 19.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4명, 통역번역학석사 17명)
- 2017. 2. 17.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18명, 통역번역학석사 12명)
- 3. 1. 제8대 통역번역대학원장 김아영 박사 취임
- 8. 17.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9명, 통역번역학석사 5명)
- 2018. 8. 17.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8명, 통역번역학석사 5명)
- 2019. 2. 20.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11명, 통역번역학석사 2명)
- 8. 23.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16명, 통역번역학석사 7명)
- 2020. 2. 21.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10명, 통역번역학석사 6명)
- 8. 14. 석사 학위 수여(번역학석사 7명, 통역번역학석사 5명)

3. 조직 기구표



4. 행정부서

업무현황

부서명	담당 업무	구내전화
대학원교학과	신입생 선발, 강의 시간표 작성, 교과과정 편성, 강의실 배정, 강의평가, 강의료, 성적, 휴·복학 학적변동, 장학, 학생관련 업무 등	5141 / 5142 / 5144

5. 학생 선발

□ 전공 및 정원

과정	전공	입학 정원
2개 언어(A-B) 과정	한영전공 / 한일전공 / 한중전공	40명

□ 전형방법

가) 서류심사

나) 1차 필기시험

구분	시간	배점
한외번역	60	50
외한번역	60	50
<b>계</b>		<b>100</b>

다) 2차 구술시험 및 면접

구분	시간	배점
구술	1인당 3-5분	100
면접	1인당 3-5분	50
<b>계</b>		<b>150</b>

## IV. 산업 · 경영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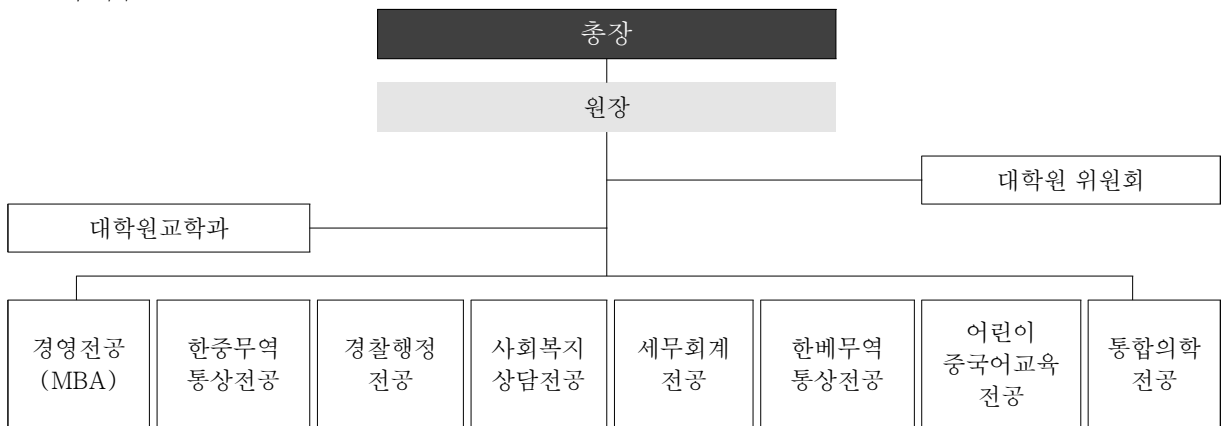
### 1. 목적

산업 · 경영대학원은 우리 대학 교육목표인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산학연계형 전문인을 양성하는 특성화된 대학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실천적 도덕성, 창의적 탐구성, 국제적 전문성을 겸비한 산학 연계형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혁

- 1959. 12. 24. 학교법인 성지학원 설립 인가
- 1981. 12. 26. 부산외국어대학 설립 인가
- 1982. 3. 12. 부산외국어대학교 개교
- 2016. 11. 3. 산업대학원 설치 인가(정원 40명)
- 2017. 3. 1. 제1대 산업 · 경영대학원장 정철호 박사 취임  
8. 18. 석사 학위 수여(경영학석사 6명)
- 2018. 2. 23. 석사 학위 수여(경영학석사 11명)  
3. 1. 제2대 산업 · 경영대학원장 정우성 박사 취임  
8. 17. 석사 학위 수여(경영학석사 5명, 경찰학석사 3명, 상담학석사 5명, 교육학석사 3명, 통합의학석사 7명)
- 2019. 2. 20. 석사 학위 수여(경영학석사 12명, 경찰학석사 1명)  
8. 23. 석사 학위 수여(경영학석사 6명, 경찰학석사 1명, 통합의학석사 3명)
- 2020. 2. 21. 석사 학위 수여(경영학석사 10명, 경찰학석사 1명, 상담학석사 3명, 교육학석사 1명, 통합의학석사 6명)  
8. 1. 제3대 산업 · 경영대학원장 임동우 박사 취임  
14. 석사 학위 수여(경영학석사 7명, 상담학석사 2명, 통합의학석사 7명, 경찰학석사 1명)

### 3. 조직 기구표



### 4. 행정부서

업무현황

부서명	담당업무	구내전화
<b>대학원교학과</b>	신입생 선발, 강의 시간표 작성, 교과과정 편성, 강의실 배정, 강의평가, 강의료, 성적, 휴 · 복학 학적변동, 장학, 학생관련 업무 등	5141 / 5142 / 5144

5. 학생 선발

□ 전공 및 정원

전공	입학 정원
통합	59명



## V. 글로벌골프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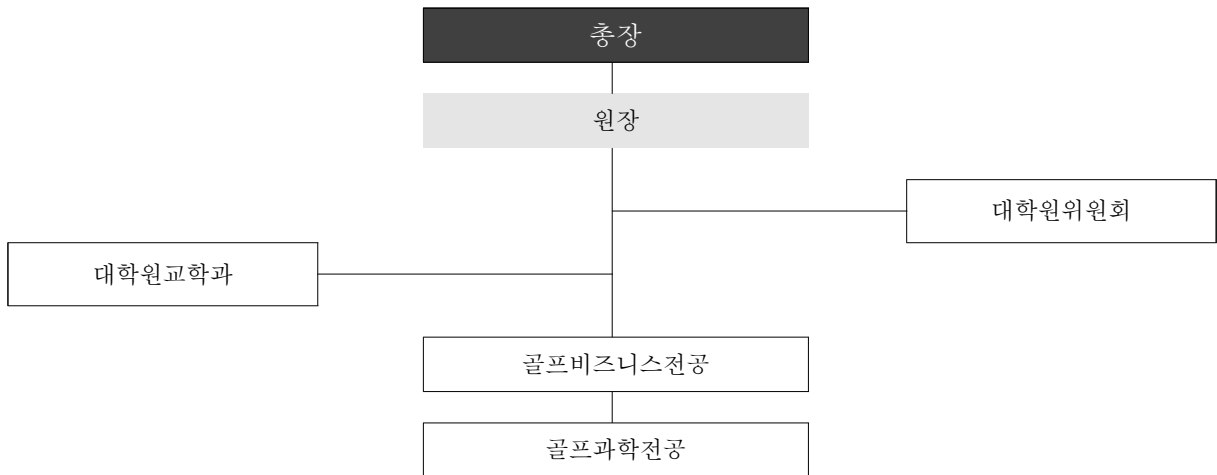
### 1. 목적

글로벌골프대학원은 골프와 관련된 비즈니스 전반적인 분야를 분석하며, 골프 스윙 원리, 골프 스윙 분석, 골프 기능성 트레이닝 및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실기 기술을 배워 골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성을 가지며, 골프 산업 및 골프 트레이닝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혁

1959.	12. 24.	학교법인 성지학원 설립 인가
1981.	12. 26.	부산외국어대학 설립 인가
1982.	3. 12.	부산외국어대학교 개교
2015.	11. 3.	글로벌골프대학원 설치 인가(정원 20명)
2016.	3. 1.	제1대 글로벌골프대학원장 박경수 박사 취임
2018.	3. 1.	제2대 글로벌골프대학원장 정우성 박사 취임
	7. 17.	석사 학위 수여(골프학석사 5명)
2019.	8. 23.	석사 학위 수여(골프학석사 6명)
2020.	2. 21.	석사 학위 수여(골프학석사 5명)
	8. 1.	제3대 글로벌골프대학원장 임동우 박사 취임
	14.	석사 학위 수여(골프학석사 5명)

### 3. 조직 기구표



### 4. 행정부서

□ 업무현황

부서명	담당업무	구내전화
대학원교학과	신입생 선발, 강의 시간표 작성, 교과과정 편성, 강의실 배정, 강의평가, 강의료, 성적, 휴·복학 학적변동, 장학, 학생관련 업무 등	5141 / 5142 / 5144

5. 학생 선발

전공 및 정원

전공	입학 정원
통합	15명